김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십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3년 7월 3일 김포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3년 7월 11일

다. 상 정 일 자 : 2023년 7월 21일

라. 의 결 일 자 : 2023년 7월 21일

2. 제안이유

○ 김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 등의 조문 정비로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용 및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김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2조)
 - 현행 2023년 12월 31일 → 연장 2028년 12월 31일
- 나. 「김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」 폐지에 따른 현행화 (안 제3조, 제4조)
- 다. 그 밖에 "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"에 따라 용어, 띄어쓰기 등 정비

4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「지방 재정법」 제9조에 의거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「김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」 폐지에 따라 관련 사항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
-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으로 검토됨.

- 5. 질의 및 **답변요지** : 생략
- 6. 토론요지 : 생략
- 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- 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9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- 10. 주문사항 : 없음
- 11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